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나64841 판결 [임차권존재확인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1. 7. 8 선고 2020나64841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9. 16 선고 2019가단7656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

담당변호사 정호승

변론종결 2021. 6. 17.

판결선고 2021. 7. 8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. 9. 16. 선고 2019가단7656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같은 임차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,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제2면 제8~9행 중 ‘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.’를 ‘체결하였거나 피고의 2019. 9. 24.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가 2018. 2.경 원고를 찾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자인하고 있으며,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을 계속 지급받아왔고, 이 사건 건물 3층에 거주하는 자신의 처 질녀인 F를 통해 원고로부터 상하수도요금을 지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.’로 고쳐 쓴다.

○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.

『 또한, 피고의 2019. 9. 24.자 준비서면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구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자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』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선희, 판사 김평호, 판사 김혜진

별지